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금융위원회 | <h1>보도자료</h1> | | |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|
| | 보도 | 배포 시 부터 | 배포 | |
| 책임자 | 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종훈(02-2100-2990) | 담당자 | 유원규 사무관 (02-2100-2992) | |

제 목 :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- 국가·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
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-

<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>

-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, **발행권면한도**를 현행 50만원에서 **300만원으로 확대**하였습니다. (~'22.1.31일까지)

- (개정 내용)**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, 사용처,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여 **무기명 선불카드** 방식으로 **지원금을 지급**(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)하고자 하는 경우,
 - 무기명 선불카드의 **발행권면한도**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
(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: ~'22.1.31일까지)

- * '20.4월에도 지자체(경기도)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(~'20.9.30일)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음

- (기대 효과)**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,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됩니다.
 - * 예) 10인 가구(부모 + 자녀 8명)가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시, (종전) 최소 **5매 이상의 선불카드**(50만원+50만원+50만원+50만원+50만원) 필요
 → (개선)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**선불카드 2매만 필요** (예 : 125만원 + 125만원)

- (향후 일정)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.

※ 참고 :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추진 경과
관계기관 협의('21.7.27~8.2일), 입법예고('21.7.27~8.2일), 법제처심사 (~'21.8.9일), 차관회의('21.8.12일), 국무회의('21.8.17일)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